

## 각종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에 가축피해시 효율적인 보상방안

류일선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최** 근 우리나라도 우사, 돈사 등 축사부  
근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로, 복선전철  
및 고속도로의 확장과 신설, 하수 종말처리장  
및 농장 등 신축시에 발생하는 발파 소음·  
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요사이 고속전철의 개통에 따른  
주행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축산농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것이 환경  
분쟁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겠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구비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  
까운 광경을 보아온 터라 감히 펜을 들어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임상수의사들이 이러한 경우에  
폐사, 도태 및 유·사·조산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그  
내용이 부실하여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감히 지적을 해나갈까 한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분쟁에 있어서는 피해액이  
1억원미만일 경우에는 각 도 지방환경분쟁위  
원회에서 처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피해  
축산농가에게는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분쟁조정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절차, 현재 중앙과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현황과 피해축산  
농가가 구비해야할 증거자료, 피해보상신청  
방법이나 요령, 우리 임상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나 소견서의 작성요령 등을 소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 1. 환경분쟁조정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절차

가. 알선신청(처리기간 : 3월)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 : 알선위원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게 하는 절차 합의(불성립시 조정 또는  
재정신청, 소송제기)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나. 조정신청(처리기간 : 9월)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에 수락을 권고할 권고하는 절차 수락(수락 거부시 재정신청, 소송제기)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다. 재정신청(처리기간 : 9월)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 재정위원회가 인과 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승복(불복시 소송 제기)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2. 환경분쟁 조정 절차의 주요 개요

가. 사건의 접수

- (1) 형식 및 실질적 요건의 검토
- (2) 조정위원 및 심사관 등 지명통보
- (3) 사건 접수
- (4) 피신청인에게 사건관련 의견제출요구

나. 사건의 검토

- (1) 형식 및 실질적 요건의 검토(조정대상 여부, 당사자 적격, 주장 및 분쟁의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

다. 현지 조사

- (1) 사실 조사 : 환경피해 진행상태 현장 확인, 양 당사자 주장 청취 및 분쟁 당시의 증거 확보 등)
- (2) 당사자 자료 요구

라. 전문가 현지 조사

- (1) 인과 관계 규명, 피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자문

마. 심사보고서 작성

- (1) 위원회 개최통보
- (2) 심사보고서 작성 : 사건의 개요, 사실조사 결과, 인과 관계 등 포괄하여 작성
- (3) 심사보고서 실무 검토

바. 회의 준비 및 위원회 검토

사. 재정문 송달 및 후속조치

3. 중앙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관할의 범위(환경분쟁조정법;2002.12.26개정, 시행령;2003.6.23개정, 시행규칙;2003.7.8개정)

가. 중앙조정위원회

- (1) 분쟁의 재정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3)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 (4) 직권조정(제 30조 규정)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조정

나. 지방조정위원회

- (1) 당해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한 조정의 사무
- (2) 조정목적의 가액이 이하인 분쟁의 재정 사무

※ 참고자료(국내 환경분쟁조정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2-504-9303~5	02-504-9306
서울특별시	대기과	02-3707-9772	02-3707-9549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1-888-3605	051-888-3609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429-3715	053-429-3519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032-440-3516	032-440-3519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06-3514	062-606-3519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600-2611	042-600-2619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22	052-229-3149
경기도	환경보전과	031-249-4242	031-249-3519
강원도	환경정책과	033-249-3522	033-249-4035
충청북도	환경과	043-220-3532	043-220-3519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042-220-3512	042-220-3519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063-280-3532	063-280-3509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062-607-4778	062-607-6210
경상북도	환경관리과	053-950-2389	053-950-3519
경상남도	환경관리과	055-211-4123	055-211-4119
제주도	환경정책과	064-710-2622	064-710-2619

#### 4. 분쟁조정현황

##### 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4. 3.31현재)

###### (1) 피해원인별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토양오염 3, 추락 위험1, 기름유출 1)
계(%)	1,082 (100)	924 (85)	98 (9)	47 (5)	8 (1)	5 (-)
'04. 3	66	65	1			
'03	292	264	19	8		1
'02	263	229	26	4		4
'01	121	103	11	7		
'00	60	49	7	4		
'99	79	67	8	4		
'98이전	201	147	26	20	8	

(2) 피해내용별

구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정신적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수산 물 피해	해양수산 물 피해	기타 피해
계(%)	1,082	423	250	163	61	51	30	9	95
(100)	(39)	(23)	(15)	(6)	(5)	(3)	(1)	(8)	
'04. 3	66	31	19	8					8
'03	292	149	58	18	9	12	5		41
'02	263	121	65	42	13	7	1		14
'01	121	36	33	26	8	2	5		11
'00	60	16	13	15	4	2	5		5
'99	79	19	22	23	6	4	2		3
'98이전	201	51	40	31	21	24	12	9	13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3. 12.31현재)

(1) 피해원인별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242	196	32	11		3
(100)	(81)	(13)	(5)	(1)		
'03	57	52		2		3
'02	34	27	6	1		
'01	46	37	6	3		
'00	35	30	5			
'99	22	17	4	1		
'98이전	48	33	11	4		

(2) 피해내용별

구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정신적	건축물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내륙수산 물 피해	해양수산 물 피해	기타 피해
계(%)	242	75	29	47	38	30	4	1	18
(100)	(31)	(12)	(19)	(16)	(13)	(2)	(-)	(7)	
'03	57	29	5	11	3	4			5
'02	34	8	1	11	5	5	1		3
'01	46	16	5	9	5	8	2		1
'00	35	12	7	10	3	2			1
'99	22	6	3		8	3			2
'98이전	48	4	8	6	14	8	1	1	6

## 5. 피해농가 제출해야할 자료

※신청인 제출자료사례(축산물 피해일 경우;  
소음·진동 등)

- 피해사진 및 주변환경사진
- 연도별 축산물 관리대장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 명세표
- 공인 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 동물사육장 평면도
- 피해 현황자료
- 기타 참고자료(수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정액(난자)증명서 및 인공수정증명서, 읍·면·동장 발행의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원, 한우개량단지의 경우 혈통등록우 관리카드, 육질저하의 경우는 OO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발행의 육질판정내역서, 도축검사 증명서, 젖소 검정기록, OO축산업협동조합발행의 우유생산 및 집유내역, 평균지방율, 세균수 및 체세포수 등급내역, 체세포수 관리통지서, 임상전문수의사의 번식검진내역, 번식성적관리 등)

## 6. 피해농가의 피해보상신청방법 및 요령(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edc.me.go.kr>)

### 가. 신청사건 처리 절차

- (1)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

인에게 사건을 담당할 심사관과 재정위원을 임명하여 알려드리고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 요구

- (2)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사건담당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알림 및 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 (3) 담당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 실시 (신청서 접수 후 한달 이내로 실시)
- (4) 당사자 출석요구서 발송
- (5) 회의 개최 및 당사자 심문
- (6) 담당심사관의 현지조사결과와 재정회의에서의 당사자 심문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피해인정 여부와 배상 금액 결정
- (7) 재정문 송달
- (8)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당사자간 합의효력 발생
- (9) 가해자가 위 기간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도 하지 않을 경우 패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이행 소송제기

### 나. 신청서 작성방법

- (1) 신청시 구비서류
- (가) 신청서 정본 1부
- (나) 선정대표자 선정 및 선정 동의서 각 1부
-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

① 동의서는 개인별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날인 가능

※ 신청인·대표선정동의 및 개인별 피해 금액내역은 아래 작성예시에서와 같은 통합서식으로 작성

(다) 증거 및 참고자료

<정신적 피해의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피해지역에 피해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는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

<인체·건강 피해의 경우>

② 전문의사의 건강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기타 피해현황 자료

<재산피해의 경우>

① 건물피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록부등본(피해자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공사원가 계산서(피해가옥의 수리 비용 견적서), 지적도 등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액 산정 참고자료

② 축산물 피해의 경우

㉠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

㉢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동물사육장

평면도 등 피해현황 자료

③ 과수 및 농작물 피해일 경우

㉠ 토지대장 및 등록부등본

㉡ 지적도

㉢ 연도별 판매거래명세표

㉣ 종자구입 및 관리비용자료, 피해 과수 및 농작물 현황자료

④ 수산물 피해의 경우

㉠ 어업허가권 사본

㉡ 종패, 치어 등의 구입 및 관리 비용의 자료

㉢ 피해 현황자료

※ 공동자료: 피해사진 및 주변환경사진  
다.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

피해를 입은 개인은 신청인의 이름, 전화 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은 법인등기 부등본상 상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상의 상호를 기재하며, 별지에 신청인명 단 작성한다.

◆ 선정대표자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대표자(3인이하)를 선정하여 기재하고 별지에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선정동의 서(반드시 서명날인 또는 지장을 찍는 다)를 작성한다.

◆ 피신청인

피해를 주는 회사등 본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오염 발생의 일시·장소

피해를 주는 공사장, 공장의 현지주소

및 현장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피해발생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소음 등 주요 피해원인 및 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한다.

◆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신청인별로 피해입은 금액과 산출근거를 별지에 상세히 작성한다.

◆ 분쟁의 경과  
분쟁사유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유관기관, 피신청인등과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별지에 상세히 작성한다.

<b>9-5.재 정 신 청 서</b>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가축피해의 경우)				가축
				9월이내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목장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④ 주소	법인 개인	(전화 : )	
		00시 00동 123번지(전화번호 : 062-123-1234)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개발주식회사		
	⑨ 성명(대표자)			
	④ 주소	법인 개인	00도 00시 00동 121번지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98.10~현재까지,○○군○○면○○리○○번지 도로공사장		
⑫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98.10~현재까지,○○군○○면○○리○○번지 일대 신청인 축사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젖소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배상 신청(별첨1)		
⑭ 피해(예상)금액		총 310,000,000원(별첨2)		
⑮ 분쟁의 경과		별첨3		
⑯ 참고자료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관련사진○○매 등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별첨 1.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 '98. 10월부터 000고속도로 00~00간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목장의 초지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방목하던 가축(젓소)의 성장이 지연되어 우유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체중이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젓소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이 자리에서 목장을 계속할 수가 없어 목장이전과 그 동안의 젓소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 ▶ 또한 포크레인, 불도져 등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정신적 배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첨 2.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산출근거**

피해내역	보상요구액(천원)	비고
초지사용 못한 피해(사료구입)	16,000	관련 근거자료 첨부
젓소의 폐사 피해	2,500	"
젓소의 유산 피해	1,500	"
착유불능으로 인한 소득감소 피해	60,000	"
정신적 피해	30,000	홍길동외 2인에 대하여 각각10,000천원씩 배상
이전비	200,000	관련 근거자료 첨부
계	310,000	

**별첨 3. 분쟁의 경과**

· '98. 10. 01 : 000고속도로 00~00간

건설공사 착공

- '00. 3. 31 : 시공사로부터 피해일부에 대해 배상받음 (배상금액 : 00,000천원)
- '00. 6. 06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 '00. 8. 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 (분쟁조정 신청 권고)
- '00. 09. 2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6. 임상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작성 요령**

가. 진단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시 우리 임상수의사들이 작성하는 질병발생이나 유·사·조산시 등에 진단서에는 가능한 모든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동물의 표시란에 있는 종류, 품종, 표식번호 및 동물명, 성별, 연령, 모색, 특징 및 모색란은 비워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병명과 예후소견란

에서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해 질병이나 유·사·조산시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견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필자가 전국 각지의 환경분쟁현장에 직접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수하는 임상수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는 가끔 적이 놀랄 때가 많다.

소음·진동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질병발병 시나 유·사·조산시에 발병일시와 진단서 발행일자가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유·사·조산시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특히 유산의 경우 0개월령 유산표시 등)되어 있어 인정기가 지난한 경험을 한 바가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소음·진동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질병발병 시나 유·사·조산시에는 예후소견란에는 “소음·진동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질병이나 유·사·조산 등의 발생...”을 기재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예의 경우에는 환경변화로 인한 질병 발생이 아닌 경우의 진단서가 발행된 예도 있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질병 발병일과 유·사·조산시에 발행하는 수의사의 진단서발부일이 객관적인 증좌가 없이 한꺼번에 동일한 날짜에 집중하여 작성하는 경우와 발병일자와 진단서발부일자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기가 지난한 예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예에 있어서는 번식기록과 대조를 해보면 분만을 한 다음에 유·산·조산을 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인정되지 않은 예도 있다.

나. 소견서 대개의 경우는 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부의 전문수의사는 소견서를 자세

하게 작성을 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현지 조사를 하는 필자의 경우는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고 있다. 특히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 발행의 정액(난자) 증명서 및 인공수정증명서를 살펴보면 암가축 사육자의 란에 품종, 번호 또는 이름, 등록번호, 목장명표시가 불분명하고 인공수정란에 수정 일자, 횟수 등이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못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예도 있다.

다. 기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질병 등의 발생으로 소요된 치료 및 약품비의 경우는 명백하게 그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좌가 있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대개의 경우는 일반질병이나 소음·진동 등의 환경에 발생된 치료 및 약품비의 영수증을 모두 포함시켜 발행하여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현지 조사를 하는 전문가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필자가 전국 각지의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현장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피력을 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절차, 현재 중앙과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현황과 피해 축산농가가 구비해야할 증거자료, 피해보상신청방법이나 요령, 우리 임상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나 소견서의 작성요령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 자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 수**